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108호, 2026. 5. 12. 시행) 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법률상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위임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2조의2)
- 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및 예외적 기간 연장 사유, 후견인 권한 점검 등 필요사항 규정(안 제22조의4)
- 다. 아동권리보장원장이 후견인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및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규정(안 제24조)
- 라.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삭제(제55조의2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임시 후견인)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로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자(이하 “임시 후견인”이라 한다)는 해당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 동의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민법」 제909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해당아동에 중대한 장애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빈번 또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임시 후견인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후견인 역할을 하는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제2항에 따른 연장사유가 종료된 때까지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로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임시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견사무보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 후견인에게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 점검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후견사무보고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 점검 결과상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 제4항에 따른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 제5항에 따른 보완 자료 요청 및 현장 점검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법률상담 지원)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보호 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후견인의 권한 종료, 사임 등 후견인 지위 변동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재산권 취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성년후견 감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5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u>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u>)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u>아동권리보장원</u> (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의2(<u>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u>) ① ----- ----- <u>국가아동권리보장원</u> ----- ----- -----.
<신 설>	제22조의4(임시 후견인)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로 <u>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자</u> (이하 “임시 후견인”이라 한다.)는 해당 아동을 대신 하여 신청, 동의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u>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민법」 제909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해당 아동에 중대한 장애 또

는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가 빈번 또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임시 후견인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후견인 역할을 하는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제2항에 따른 연장사유가 종료된 때까지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로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받

	<p>은 <u>임시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⑤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견사무보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 후견인에게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 점검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u></p> <p>⑥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후견사무보고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 점검 결과상 임시 후견인 권한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개선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u></p> <p>⑦ <u>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 제4항에 따른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 제5항에 따른 보완 자료 요청 및 현장 점검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u><신 설></u></p>	<p>제24조(법률상담 지원)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p>

	<p><u>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후견인의 권한 종료, 사임 등 후견인 지위 변동에 관한 사항</u> <u>2. 아동의 재산권 취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3. 미성년후견 감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u></p>
<p><u>제55조의2(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u></p>	<p><u><삭 제></u></p>

<p><u>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차보고서를 아동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 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16